

<별표>

오산대학교 생활관 관생수칙

- 오산대학교 생활관 운영 관리 지침 제4장 제20조(상벌제)에 의거하여 운영
- 관생 상점 부여기준

연번	상점 내용	상점
1	생활관생의 안전과 시설 보호에 기여한 행위(화재 진압,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또는 응급구조 등)	5점
2	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신고, 간병 등으로 봉사한 행위	
3	범죄혐의자 또는 강제퇴사에 해당하는 사항 등을 신고한 행위	
4	생활관 발전에 기여하거나 명예를 선양시킨 자	3점
5	생활관 관련한 업무 보조 및 봉사활동	
6	호실 내 환경 미화 및 청소 상태가 우수한 행위	
7	생활관 주최 행사에 참여한 행위(단, 상점부여 행사에 한함)	
8	기타 공동생활에 모범이 된 자	

□ 관생 별점 부여기준

- 30점 이상인 자는 강제퇴사하며, 강제퇴사된 자는 졸업 시까지 입사불가

연번	별점 내용	별점
1	학칙에 의거 중징계를 받은 경우	강제 퇴사
2	생활관 사용권의 양도, 전대 등 이와 유사한 행위	
3	이성간 혼숙행위 및 이성의 방에 출입하거나 출입을 허용하는 행위	
4	관내에서 도박, 마약복용, 폭행, 절도 등 파렴치행위를 한 단체생활 부적응자	
5	관내 생활에 지장을 주는 단체 활동 및 주동행위	
6	관생 및 관리자 폭력, 성추행(폭력) 등	
7	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행동을 한 경우	20점
8	관계직원의 승인 없이 본인 이외의 외부인에 대한 숙박제공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	
9	반려·애완동물(곤충포함) 반입 및 임대양육	
10	생활관 거주학생 등 타인의 물품 등을 무단으로 사용, 파괴 하는 행위	
11	생활관 내 사고(화재, 연기, 탄냄새, 기기고장 등)를 유발하고, 직원에게 즉시 신고하지 않은 행위	10점
12	의도적으로 관내의 기물/시설물을 손상(낙서포함) 및 파괴하는 행위	
13	직원의 정당한 지도나 점검(청소 및 퇴실 점검 등)에 불응 또는 불손하게 대응하는 행위	
14	부착물의 첩부, 광고물, 음란물 등의 무단 전시 배포	
15	관내 전열기 사용 및 화재 인화물질, 위험물 반입행위	
16	생활관 내(호실, 복도, 테라스 등) 또는 외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행위(연초, 전자담배 등 일체)	
17	배정된 호실을 허가 없이 임의로 바꾸는 행위	5점
18	호실 등 생활관 내/외의 시설물의 무단 이동, 가공 등의 행위 및 벽면 훼손 행위(못질, 스티커 등 부착)	
19	해당 호실의 정리정돈 및 청소 불량자 (쓰레기 방치, 무단 투기, 분리수거 미실시 등)	
20	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 및 담배꽂초를 무단 투기한 경우	
21	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임의적으로 수취하거나 개봉행위	
22	고성방가, 게임, 전화통화 등 소란/소음을 일으키는 행위	
23	무단으로 생활관 공식행사에 불참하는 행위(오리엔테이션, 소방훈련 등)	
24	본인이 거주하는 호실 외에 다른 층, 호실에 방문·출입하는 행위	
25	호실 외 공용공간에 개인 물품(빨래, 음식 등)을 방치하여 공용공간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	
26	서류(외출신청서 및 기타 서류 등)제출 사항에 대한 비협조 행위	
27	변기, 세면대, 하수구 등에 이물질(물티슈, 머리카락, 음식물 등)을 넣어 막히게 한 경우(공사 발생 시 비용 지불)	
28	분리수거 불이행 또는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 이외에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	
29	배달 음식, 그릇 등을 생활관 밖에서 직접 수령하지 않거나 생활관 내에 방치한 행위	

# 오산대학교 생활관 운영 관리 지침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기숙사의 명칭은 오산대학교 생활관(이하"생활관"으로 한다.)으로 칭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이 지침은 오산대학교(이하"본 대학"이라 한다.) 생활관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운영감독)** 생활관 운영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취업처에서 운영 관리하며, 생활관장은 학생취업처장(이하"관장"이라 한다.)으로 한다.

**제4조(개관 및 이용제한)** 생활관의 개관 기간은 1년 및 1학기 단위로 하며 시설의 이용은 생활관 관생에 한한다.

다만, 본 대학의 유관 단체의 이용 요청 시 이용 목적이 본 대학의 교육 이념과 목적에 부합되고,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학생취업처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허락할 수 있다.

**제5조(관생수칙 등)** 학생취업처는 생활관 입주 학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생수칙 및 운영 지침을 정한다.

## 제2장 운영위원회

**제6조(운영위원회)** 생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은 학생복지위원회(이하"운영위원회"라 한다.)가 심의한다.

**제7조(기능)**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생활관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 및 지침에 관한 사항
- ③ 관생 부담금에 관한 사항
- ④ 생활관생 선발에 관한 사항
- ⑤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

**제8조(회의)**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 제3장 입사와 퇴사

**제9조(입사자격)**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본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으로 하며,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方正한 자로 한다. 다만, 그 외의 자에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.

**제10조(입사절차)** 생활관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대학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 후 개별 신청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입사기간)** 입사 허가는 매년, 매 학기 시작 전에 결정하며, 거주는 1년 및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.

**제12조(선발기준 및 동점처리)** 학생의 입사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선발기준 : 본 대학을 기점으로 원거리거주자, 저학년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.
- ② 동점처리 : 원거리 거주자 → 성적 → 생년월일(연소자 순)
- ③ 거리환산 : 본 대학을 중심으로 해당지역 시청의 직선거리 적용한다.
- ④ 선발비율 : 1학년 70%, 2학년 30%로 적용한다.
- ⑤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우선 선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⑥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취업처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3조(입사제한)** 다음 각 호의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.

- ① 학칙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
- ② 휴학 또는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자
- ③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
- ④ 직전 학기 입사자 중 강제퇴사자 및 퇴사 점검을 받지 않고 퇴사한 자
- ⑤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**제14조(퇴사)** 관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학기 중에는 퇴사할 수 없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퇴사원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15조(퇴사처분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퇴사 처분한다.

- ① 관생수칙을 위반하여 벌점이 초과하거나 강제퇴사에 해당하는 자
- ② 제14조의 ①항, ②항, ③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
- ③ 학과 수업에 장기간 무단결석 등 학업에 태만한 자
- ④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**제16조(퇴사신고)** 관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담당직원

으로 부터 시설 및 물품의 훼손이나 분실을 확인 받은 후 퇴사한다.

## 제4장 관생 수칙

### 제17조(호실 배정)

- ① 관생들에게 배정된 호실과 가구 등의 집기는 사생 자의적 이동이나 변경 할 수 없다.
- ② 부득이한 경우 담당직원의 허락을 받아 배정받은 호실을 변경 할 수 있다.

**제18조(기물보존 및 변상)** 관생은 생활관의 모든 기물은 이용 가능하며 고의적 또는 과실의 기물 파손 시 이를 변상해야 한다.

**제19조(화기관리 및 청결)** 관생은 생활관 내에서 화기 단속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,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존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상벌제)** 생활관 내의 공동생활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상·벌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1. 상점으로 벌점을 만회 할 수 있다. 다만 강제 퇴사는 제외한다.
2. 벌점이 누계 30점 이상인 관생은 강제퇴사이며, 강제 퇴사된 자는 졸업 시 까지 입사가 제한될 수 있다.
3. 상, 벌점은 부여 받은 날로부터 퇴사 시 까지 유효하다.
4. 기타 세부사항은 ,<별표> 관생수칙에서 따로 정한다.

## 제 5 장 재 정

### 제21조(경비부담)

생활관의 기본시설비 및 기본시설 보수비 등 학교 당국의 보조로 총당된 경비를 제외한 관생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관생이 부담한다.

### 제22조(납부금)

- ① 관생이 납부한 생활관 비용은 월임대료, 공동관리비, 기타운영비 등으로 구분한다.
- ② 관생이 납부하여야 할 생활관비는 입사비, 입사보증금, 관리비 등이 있으며, 생활관비는 매년 학기 시작 전에 따로 정한다.
- ③ 생활관비의 납부와 환부에 관한 사항은 학생취업처에서 따로 정한다.

**제23조(중도퇴사 환불 및 중도입사자 입사금액)** ① 관생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

도퇴사 할 경우 지침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.

1. 중도퇴사자 환불금액

사유	환불내역 (1학기 기준)		
	기간	임대료, 공동관리비 기타운영비	전기,가스,수도
자퇴·휴학 취업·질병 징계 퇴사 자진 퇴사	입실 전 (입사 포기)	전액	전액
	입실 일부터 30일 까지	6분의5 해당액	본인 사용금 정산 후 환불
	입실 일 31일부터 60일 까지	3분의2 해당액	
	입실 일 61일부터 90일 까지	2분의1 해당액	
입실 일 91일 부터	환불 없음		
기타사유	사유 판단 후 위 기준에 의하여 환불		

※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(등록금의 반환기준) 준용

※ 입사보증금 100,000원은 퇴실 시 생활관에 이상 없을시 전액 환불

2. 중도입사자 입실금액

구분	입금내역 (1학기 기준)		
	기간 및 입금 현황	임대료, 공동관리비 기타운영비	전기,가스,수도
중도입사	1학기 기준	1학기 기준 일할 계산 금액 입금	본 대학에서 정한 금액 입금

※입사보증금 100,000원은 퇴실 시 생활관에 이상 없을시 전액 환불함

② 제18조에 의거 퇴사 조치되는 자 중 기물파손 및 분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.

**제24조(회계년도)**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.

**제25조(분쟁 조정)**

이 지침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**부 칙**

이 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지침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지침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